

2025

철도교통관제사 철도관련법

엠북 교통

공부혁명!
mbook.kr

- ✦ PDF 전자책
- ✦ 4시간 완성, 암기코드 제공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종합
- ✦ 최근 개정 내용 반영, 고득점 가능

도서명 : 철도교통관제사 철도관련법

ISBN : 979-11-7393-028-7

발간일 : 2025-05-28

형식 :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23,000원



철도교통관제사 철도관련법

[목차]

제1권 철도안전법(p4)

제2권 도시철도법(p134)

제3권 관련 지침(p168~221)

[약어]

국토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장관

공단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 이사장

부령은 국토교통부령

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비고]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붉은색은 시행예정

초록색은 최근(1~2년내) 개정 내용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권 철도안전법

[목차]

- 제1장 총칙(p5)
- 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p10)
- 제3장 종사자의 안전관리(p22)
-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p53)
-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p83)
- 제6장 철도사고조사·처리(p116)
-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p118)
- 제8장 보칙(p123)
- 제9장 벌칙(p128)

[약어]

- 법은 철도안전법
- 시군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 연구원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
- 적성검사기관은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 운영자등은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
- 철도경찰은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 차량은 철도차량
- 고시는 정하여 고시 또는 고시
- 훼손은 헐어서 못 쓰게되는 것
- 분실등은 잃어버리거나 훼손
- 면적단위는 제곱미터

제1장 총칙

1~4조

1. 목적

- 철도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철도안전 관리체계 확립
- 공공복리 증진

2. 정의

1) 철도

- 여객/화물 운송 철도시설, 차량,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 구성된 운송체계

2) 전용철도

-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 수행을 위해 설치, 운영
- 영업 목적~~아~~님

3) 철도시설(부지 포함)

- 선로(부대 시설 포함), 역시설(물류/환승/편의 시설 포함),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선로/차량 보수/정비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 철도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열차제어설비

-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운영 시설
- 철도기술 개발/시험, 연구 시설
- 철도경영연수, 철도전문인력 교육훈련 시설
- 철도 건설/유지보수, 운영 시설

4) 철도운영

- 철도 여객/화물 운송
- 차량 정비, 열차 운행관리
- 철도시설/차량/부지 활용 부대사업개발, 서비스

5) 철도차량

- 선로 운행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 객차, 화차, 특수차

6) 철도용품(이하 용품)

- 철도시설, 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 기기, 장치 등

7) 열차

- 선로 운행 목적으로 운영자가 편성해 열차번호를 부여한 차량

8) 선로

- 차량 운행 궤도, 이를 받치는 노반이나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

9) 철도운영자(이하 운영자)

- 철도운영 업무 수행

10)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

- 철도시설 건설, 관리

1) 철도종사자(이하 종사자)

가) 운전업무종사자(이하 운전종사자)

나) 관제업무종사자(이하 관제종사자)

- 차량 운행 집중 제어, 통제, 감시

다) 여객승무원(이하 승무원)

라) 여객역무원(이하 역무원)

마) 작업책임자

- 선로나 인근에서 철도시설 건설, 관리 작업 협의, 지휘, 감독, 안전관리하도록 운영자등이 지정

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

- 선로나 인근에서 철도시설 건설, 관리 작업 일정 조정, 열차 운행일정 조정

사) 안전운행, 질서유지 등 다음 업무 종사

-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이하 사고등) 발생 현장에서 조사, 수습, 복구

- 선로나 인근에서 철도시설 건설/관리 작업 현장감독

- 철도시설, 차량 순회점검, 경비

-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 선로전환기, 조작판 취급, 열차 조성(이하 취급/조성)

· 조성은 차량 연결/분리

-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 운영

- 철도경찰

- 철도 차량/시설 점검/정비

2) 철도사고

- 철도운영/철도시설관리 관련, 사상, 물건 파손 다음 사고

가) 철도교통사고는 차량 운행 관련 다음 사고

- 충돌사고는 다른 차량, 장애물(단, 동물/조류 제외) 충돌, 접촉
- 탈선사고는 차량이 궤도 이탈
- 열차화재사고는 차량 화재
- 기타사고

나) 철도안전사고는 철도시설 관리 관련 다음 사고(단, 자연재난 제외)

- 철도화재사고는 철도역사, 기계실 등 화재
- 철도시설파손사고는 교량/터널/선로, 신호/전기/통신 설비 등 파손
- 기타사고

3) **철도준사고(이하 준사고)**

-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가) 운행허가 받지 않은 구간으로 열차 주행

나) 선로 장애에도 진행 표시

- 예외) 관제 승인 받은 복구, 유지 보수

다) 열차/차량이 승인없이 정지신호 지나거나 역사이로 미끄러짐

라) 공사/보수작업 구간으로 열차 주행

마) 안전운행에 지장 주는

- 레일 파손, 허용범위 벗어난 선로 뒤틀림

- 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고장

바) 차량에서 화약류 등 위험물, 위해물품 누출

사) 상기에 준하는 것

4) **운행장애**

- 철도사고, 준사고 외 차량 운행에 지장 주는 것

- 가) 관제의 사전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 나) 운행 지연

- 단, 다른 철도사고나 운행장애 인한 지연 제외

- 고속/전동 열차 20분

- 일반여객열차 30분

- 화물/기타 열차 60분 이상

5) 차량정비

- 차량(부품, 기기, 장치 포함) 점검, 검사, 교환, 수리

6)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이하 정비기술자)

- 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학력을 갖추어 장관 인정 받은 자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철도안전은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 없으면 법 따름

4. 조약과의 관계

- 한국 포함 여러 국가에 걸친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여객 운송에 관해 한국이 체결한 조약에 법과 다른 규정 있으면 조약 따름

- 예외) 법이 조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포함시

5. 책무

- 국가/지자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 철도안전시책 수립/추진

- 운영자들은 법령에 따라 철도안전 조치,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

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5~9조

-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시설 안전관리의 유기적 체계

1. 장관의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가) 5년마다 수립

(내용)

- 추진 목표/방향
- 시설 확충/개량/점검
- 차량 정비/점검
- 관계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
- 전문 인력 양성/수급관리
- 종사자 안전, 근무환경 향상
- 교육훈련
- 연구/기술개발
- 장관 인정 사항

나) 중앙기관장, 운영자등과 협의 후 철도산업위 심의거쳐 수립

- 수립된 계획 변경시도 같다

· 예외) 다음의 경미한 변경

· 총사업비 1/100내 변경

· 종합계획상 시행기한내 단위사업 시행시기 변경

· 기본방향에 영향없는, 법령 개정, 행정구역 변경 관련 변경

- 다) 중앙기관장, 시도지사에게 자료 요구 가능
- 라) 수립/변경한 때 관보에 고시

2. 시행계획

- 가) 장관, 시도지사, 운영자들은 종합계획에 따라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나) 시도지사, 운영자들은 장관에게
 - 10월말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 제출
 - 2월말까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 다) 장관은 시행계획이 종합계획 위반 또는 보완 필요시 수정 요청

3. 철도안전투자(이하 안전투자) 예산규모

- 가) 운영자는 매년 5월말까지 공시
 -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에 게시

- 나) 다음 예산 모두 포함
 - 차량 교체
 - 철도시설 개량
 - 안전설비 설치
 - 철도안전 교육훈련/연구개발/홍보
 - 장관 고시 사항

다) 공시 내용

1) 안전투자 예산

- 과거 3년, 해당 년도, 향후 2년 예산
- 과거 3년간 집행 실적

2) 국가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운영자 자금 등 재원 구분 공시

3) 장관 고시 예산

4.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가. 승인

1) 전용철도를 제외한 철도운영자등은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 장관 승인받음

- 전용철도 운영자는 자체적 안전관리체계 갖추고 지속 유지

2) 철도운용,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 다음 첨부해 장관에 신청

가) 철도사업면허증 사본

나) 조직/인력 구성, 업무 분장, 책임

다) 철도안전관리시스템

- 개요, 철도안전경영, 문서화
- 위험관리, 요구사항 준수
- 철도사고 조사/보고, 내부점검
- 비상대응, 교육훈련

- 안전정보, 안전문화

라) 열차운행체계

- 철도운영 개요, 철도사업면허
- 조직/인력, 방법/절차, 운행계획
- 승무/역무, 철도관제업무
- 철도보호/질서유지
- 열차운영 기록관리
- 위탁업무 관리

마) 유지관리체계

- 유지관리 개요, 조직/인력
- 방법/절차(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를 반영한 유지관리 방법 포함)
- 이행계획, 기록, 설비/장비
- 부품, 철도차량 제작 감독
- 위탁업무 관리

바)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나. 변경승인

1) 운영자등이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시 장관의 변경승인 받음

- 안전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변경 포함

2) 변경된 철도운용,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철도노선 신설/개량시 90일) 전

다음 첨부해 장관에 신청

- 변경내용, 증빙서류

- 변경 전후 대비표, 해설서

3) 다음은 예정일 14일 전 제출 가능

-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

-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4) 장관은 승인/변경승인 신청 15일내 계획서를 작성해 신청인에 통보

다. 경미한 변경

1) 다음 이외의 변경은 장관에 신고

가) 안전 업무 수행 전담조직 변경(단, 부서명 변경 제외)

나) 열차운행, 유지관리 인력 감소

다) 차량이나 다음 철도시설 증가

- 교량, 터널, 옹벽, 선로(레일)

- 역사, 기지, 승강장안전문

- 전차선로, 변전설비, 수전실, 수/배전선로

- 연동장치, 열차제어장치,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건널목보안장치

- 통신선로설비, 열차무선설비, 전송설비

- 철도노선 신설/개량

- 사업 합병, 양도/양수

- 유지관리 항목 축소, 주기 증가

- 위탁 계약자 변경에 따른 열차운행체계나 유지관리체계 변경

2) 운영자들은 장관에 변경내용, 증빙서류, 변경 전후 대비표, 해설서 제출

- 장관은 변경신고확인서 발급

라. 장관

1) 승인/변경승인 신청 받은 때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 후 결정

가) 서류검사

- 제출 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

나) 현장검사

- 이행가능성/실효성 현장 확인

- 서류검사만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생략

다) 검사 세부 사항 고시

2) 도시철도나 도시철도 건설/운송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운영 도시철도에 대해 안전관리체계 승인/변경승인 검사시 도시철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 가능

- 시도지사가 협의 요청 20일내 의견 제출않으면 의견 없음 간주

3) 승인증명서 발급

4) 철도 운영/시설 안전관리 기술기준 고시 요

-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 조사/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 시설 유지관리, 차량 기대수명 등

- 기준 정할 때 철도기술심의위 심의 거칠 수 있다

- 기준 정한 때 관보에 고시

5. 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가. 운영자등

-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 지속/유지